

하남혁신교육지구 시즌III 업무협약(MOU) 동의(안)

의안 번호	2164
----------	------

제출연월일 : 2020. 11. .
제출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하남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 상호 협력하여 하남형 교육모델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하남혁신교육지구 시즌III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시즌II 협약기간 2021. 2.종료로 2021. 3.부터 시즌III 추진을 위한 협약필요

2.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시즌III」 지정
- 제2조(협력분야)
 - (교육자치)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
 - (교육협력) 학교와 마을의 협력을 통한 혁신교육생태계 강화
 - (미래교육)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체제 구축
 - 「혁신교육지구 시즌III」 사업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인적·물적 자원공유
- 제3조(부속합의서 작성)
 - 시즌III 사업추진을 위해 세부사업 등이 기재된 “본 협약부속합의서” 매년작성
 - 부속합의서는 경기도교육청을 대신하여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하남시와 협의하여 체결
- 제4조(효력기간): 서명한 날로부터 2026년 2월까지

3. 2021년 사업개요

- 사업명: 하남혁신교육지구 시즌 III
- 사업기간: 2021. 3. ~ 2022. 2.
- 소요예산: 9,384백만원(시 5,674백만원, 교육청 3,710백만원)
 - ※ 시: 2021년 본예산 편성계획 내 추진(신규 801백만원, 계속 4,873백만원)
 - ☞ 하남시 사업비는 2021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요내용: 하남마을체험학교, 학교공간혁신, 토론교육 활성화 등

4. 추진경과

- 2020. 1. 26. 혁신교육지구 시즌 III T/F팀 협의회(경기도 교육청)
- 2020. 4. 3. 하남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제1769호)
- 2020. 7. 1. 하남형혁신교육심의위원회 구성(총 15명)
제1회 하남형혁신교육 심의위원회 개최
- 2020. 7. 2021 하남혁신교육지구 운영관련 설문조사(교직원 학생 학부모)
- 2020. 7. 29. 혁신교육포럼 지역교육협의회(하남시청, 광주하남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시즌 III 업무합의 체결(시장·교육장)
- 2020. 11. 12. 혁신교육지구 시즌 III 업무협약 체결 실무협의
(경기도 교육청, 하남시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5. 향후계획

- 2021. 1. 혁신교육지구 시즌III 업무협약 체결(시장·교육감)
- 2021. 1. 혁신교육지구 시즌III 부속합의 체결(시장·교육장)
- 2021. 2. 하남혁신교육지구 운영기반 조성 및 사업추진

- 붙임 1. 하남혁신교육지구 시즌III 업무협약(안) 1부.
 2. 하남혁신교육지구 시즌III 부속합의(안) 1부.
 3. 관계법령 발췌서 1부. 끝.

부서명		평생교육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팀장 직위·성명	혁신교육팀장 박수희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김두일 (031-790-5393)

하남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서

하남시와 경기도교육청은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운영에 협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하남시장과 경기도교육감이 하남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교육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시즌Ⅲ」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분야)

- ① 하남시와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지역교육자원 발굴 및 지역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혁신교육 지원
 2.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협력 사업 운영
 3.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
- ② 하남시와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향하며 경계를 넘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 실현에 협력한다.
 1. (교육자치)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
 2. (교육협력) 학교와 마을의 협력을 통한 혁신교육생태계 강화
 3. (미래교육)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체제 구축
- ③ 하남시와 경기도교육청은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부담한다.

제3조(부속합의서 작성)

- ①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 추진을 위해 세부사업 등이 기재된 “본 협약 부속합의서” 를 매년 작성한다.
- ② 부속합의서는 교육공동체의 여건과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을 대신하여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하남시와 협의하여 체결한다.

제4조(효력기간)

- ① 이 협약에 의한 협력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2026년 2월까지로 한다.
- ② 이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서면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변경 및 해지) 하남시와 경기도교육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협약서의 효력) 이 MOU(업무협약)는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월 일

 하 남 시 장

김 상 호 _____

 경 기 도 교 육 감

이 재 정 _____

(붙임2) 하남혁신교육지구 시즌III 부속합의(안)

2021 하남혁신교육지구 시즌 III 부속합의(안)

[2020. 11. 기준]

추진목표	추진과제	세부사업	사업내용	사업예산(천원)		
				교육청	하남시	계
지역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	마을공동체가 하나되는 교육자치	1. 릴레이하남 [혁신교육포럼]	하남혁신교육포럼(운영비 등)	7,500	-	7,500
			하남교육협력센터(협의체, 홍보)	55,500	-	55,500
		2. 스스로하남 [민주적학교운영]	광주하남청소년교육의회(활동 운영비)	3,000	7,500(위탁)	3,000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연수비 등)	4,000	-	4,000
			학교자치 민주시민교육(교직원 공동체 지원)	50,500	-	50,500
학교와 마을의 교육협력을 통한 혁신교육 생태계 강화	온마을이 학교되는 빛나는 교육	1. 하하하하남 [마을학교]	하남마을체협학교(신규)		399,740	399,740
			우리고장하남 교재 제작	22,000	-	22,000
		2. 빛나야하남 [창의적교육과정]	H-디투스(신규), 좋은학교만들기, 글로벌 리더양성	857,000	2,645,500	3,502,500
			자유학년제(마을연계 활동지원)	147,000	-	147,000
			고교학점제 온라인 교육마을교실(신규)	100,000	260,000	360,000
			유치원 교육과정(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비 등)	34,000	-	34,000
			문화예술교육(학교↔마을 문화교육)	69,500	1,167,658	1,237,158
			초등생존수영	299,381	299,381	598,762
		3. 바깥야하남 [공간혁신]	공간혁신 프로젝트(신규)	-	80,000	80,000
		4. 꿈꿔야하남 [학생주도교육활동]	꿈의학교	170,000	70,000	240,000
			경기꿈의대학	7,000	-	7,000
교육협동조합	1,000		-	1,000		
학교와 마을의 교육협력을 통한 혁신교육 생태계 강화	배움으로 성장하는 품격교육	1. 알아야하남 [배움공동체]	하남교육이해역량강화(교과서 속 하남투어 등)	27,600	-	27,600
		2. 모여야하남 [혁신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크(학교장, 교감, 교사 네트워크 등)	9,500	-	9,500
		3. 배워야하남 [하남형교육연구]	하남형 교육연구소, 혁신교육지구 전담팀 운영	13,400	-	13,400
지역특색 반영한 미래교육 체제구축	모두가 행복한 미래교육	1. 미래는하남 [하남형미래교육]	미래학교(학생 주도 프로젝트, 스마트교실 구축)	38,000	336,000	374,000
			대학생 멘토링(신규), 꿈드림 프로그램 지원 등	32,000	310,919	342,919
			지속가능 환경교육(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학교자체예산)	(학교자체예산)	(학교자체예산)
		2. 모두가하남 [교육복지]	평등한 배움(회복적 생활교육, 다문화 등)	60,500	-	60,500
			모두가 돌봄(기초학력, 돌봄, 방과후)	1,702,256	-	1,702,256
			꿈드림(학교 밖)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	173,851(위탁)	-
			빛나는 학습공간, 우리동네 학습공간	-	105,000	105,000
총계				3,710,637	5,674,198	9,384,835

※ 하남시 사업예산은 2021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21년 1월 일



하 남 시
시장 김상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정숙

(붙임3) 관계법령 발췌서

①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